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6구합52723 취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7. 3. 2.
판 결 선 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가 2015.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59,200,000원, 지방교육세 5,920,000원, 농어촌특별세 2,96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원고는 '등록면허세(취득세, 등록세) 0원, 지방교육세 0원, 농어촌특별세 0원으로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기재하였으나,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redacted]남 [redacted]군 B, C, D, E, F 토지 및 위 B, E 토지 지상건물 5동의 소유자이고, G은 원고의 아버지로 H 토지 및 그 지상건물 1동(이하 원고와 G의 부동산을 통칭하여 'I리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G으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아 I리 부동산을 펜션으로 조성하여 J에게 임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22. K과 사이에, I리 부동산과 K 소유의 [redacted]시 [redacted]구 L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계약서 대신 매매대금을 1,480,000,000원으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취득세 59,200,000원, 지방교육세 5,920,000원, 농어촌특별세 2,960,000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2].

다. 그런데 K은 자신이 I리 부동산에서 펜션을 경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착오 내지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거나 계약 목적 달성 불가능을 이유로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redacted]지방법원 [redacted]지원 2014가합58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가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8. K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redacted]고등법원 2015나7314호로 항소를 제기한 결과, 2015. 8. 17. '이 사건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거나 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으므로, 원고가 K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

2) 당시 신고·납부의 대상은 부천시 소사구청장이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사구청은 폐지되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2015. 9.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0. 19.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2항에 따라 부천시 소사구청장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0원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으나,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은 2015. 12. 16.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위 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redacted]시 [redacted]구청은 2016. 7. 4. 폐지되었고, 원고는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현재의 피고로 피고경정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 을 1(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계약은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이 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란 허위의 기재가 없는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을 의미하는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원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원인을 교환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였으므로 적법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경정청구를 할 권리가 없다.

㈏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당시에는 아무런 위법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부과처분 이후에 발생한 관련 소송에서의 착오는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닌 I리 부동산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발적 경정사유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허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경정청구권이 없는지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를 경정청구권자로 정하고 있는데, ① 경정청구의 사유인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의 의미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바(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8471 판결 취지 참조), 위 경정청구의 사유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될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는 점, ② 구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은 지방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함에 있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제1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그 밖의 경우(제3호)'를 구분하고 있는데, 적극적인 위계 없이 단순히 허위의 신고를 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은 제3호에 따라 5년이라고 하고 있는바(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25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1382 판결[3]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허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③ 구 지방세기본법의 문언, 입법 목적이나 조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포탈 등 조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등에서 별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거래 또는 행위 변동의 실질에 맞추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 주장은 세금을 일단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그 위법을 주장하며 경정청구하는 것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경정청구권 도입 취지에 반하고, 각종 가산세에 의한 제재나 개별사건에서 신의성실의 적용가능성 등으로 해결함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이 정한 '과세표준신고서'는 실질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과세표준신고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3) 각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9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에 관한 판례이나, 그 취지는 동일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데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중 법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는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을 반환한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4]).

(2) 인정사실

㈎ 원고는 2015. 5. 16. 인터넷 사이트에 I리 부동산에 관하여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광고를 게재하였다.

건평 400평, 독립건물 6동

M펜션, 장사 잘 되는 펜션입니다.

해수욕장 차로 3분 거리입니다.

제가 서울 쪽에 있어서 운영할 수가 없어서 서울 근교나 제주도 쪽으로 원룸이나 투룸 건물로 교

4) 증여계약에 관한 판례이나, 그 법리는 이 사건 계약에도 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환 원합니다.

매매가는 10억이고 융자 4억 있습니다.

건평이 400평이라 직접 지어도 건축비 평당 400만 원만 잡아도 16억 이상 들어갑니다.

펜션 내 TV, 냉장고, 에어컨, 침대 등 모든 집기, 비품 등도 풀옵션으로 그냥 드리고 가겠습니다.

세 놓을 경우 연간 선불 5,0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 하시면서 직접 운영하시면 수익 더 좋습니다.

성수기엔 한달에만 5,000 ~ 6,000만 원 정도 매출 올리는 펜션입니다.

N 관광 개발 계획 발표해서 투자 가치도 좋습니다.

㈏ K은 2014. 5. 22. 위 광고를 보고 원고와 만나 논의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과 I리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특약사항>

4. I리 부동산의 현재 임대상황은 보증금 없는 연 4,000만 원으로 관리비,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현재 2014. 12. 31.까지 임대가 되어 있고, 원고 측은 2015. 12. 31.까지 같은 조건으로 임대를 연장하여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임대조건으로 K에게 책임져 준다.
5. 본 교환매매는 I리 부동산과 이에 존재하는 가전, 가구, 설치물 등 기타 모든 집기들을 포함한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다.

㈐ K은 I리 부동산 중 지목이 '전'인 [redacted]남 [redacted]군 C, D, F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관할관청은 위 부동산의 현황이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받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설치된 주차장, 바비큐 시설 등을 철거하고 위 부동산을 농지 상태로 원상회복하라고 안내하였다.

㈑ 또한 K은 [redacted]군청에 문의한 결과 I리 부동산 중 [redacted]남 [redacted]군 B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만 J 명의의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이 발급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3) 검토

㈎ 위 관련 법리에 기초하여 위 처분의 경위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적법한 경정청구기간 내에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최초 신고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관련사건의 조정조서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I리 부동산을 양수하면 직접 펜션을 운영할 수 있거나, 펜션을 임대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기재하였고,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 역시 원고가 펜션 임대수익을 보장하고, 펜션 운영에 필요한 건물과 집기 모두를 교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② 그런데 I리 부동산의 펜션에는 일반적인 숙박영업허가가 아니라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만이 되어 있었다. 농어촌민박사업 신고필증은 주민 1인이 1동의 건물에 관하여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양도양수 및 승계도 불가능하므로, K이 별도의 숙박영업허가를 받지 않는 한 I리 부동산 건물 6동에서 적법하게 펜션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③ I리 부동산 중 등기부상 지목이 '전'인 토지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펜션을 운영하기 위한 부대시설인 주차장, 바비큐 시설 등을 철거하여야만 한다.

④ 이에 K은 원고를 상대로 관련소송을 제기하였고, 쌍방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여 실질적 변론을 하였으며, 1심에서는 K의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가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조정 조항 중에는 '이 사건 계약이 착오로 취소되었거나 목적달성 불능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

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행위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가 정한 후발적 경정사유, 즉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효력을 잃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⑥ 위와 같은 관련소송의 경과와 심리내용 및 조정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실체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임의조정의 형태로 권리관계가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실질적으로 합의해제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I리 부동산에 관한 착오일 뿐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소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K에게 I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와 K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이행상 견련되어 있는 교환계약인바, 이 사건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는 착오로 인한 취소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전부가 I리 부동산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된 이상,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행위 또한 취소되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민성

판사 권주연

판사 김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따라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4-27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중략)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51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명의대여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실제로 사업을 경영한 자에게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이 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및 제129조에서 같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또는 수취
3. 장부 또는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위계(위계)에 의한 행위